

1 예산총칙

제1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계		12,578,998,000	377,369,940
일 반 회 계		10,998,181,000	329,945,430
특 별 회 계		1,580,817,000	47,424,510
	기 타 특 별 회 계	1,580,817,000	47,424,510
	의 료 급 여 기 금	762,785,000	22,883,550
	치 수 사 업	7,111,000	213,330
	광 역 교 통 시 설	5,258,000	157,740
	발 전 소 등 지 역 자 원 시 설 세	118,937,000	3,568,110
	학 교 용 지 부 담 금	7,867,000	236,010
	낙 후 지 역 발 전	10,627,000	318,810
	소 방	668,232,000	20,046,960

제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과 같다.

제3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4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“명시이월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2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6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 연도 예산으로 간주 처리한다.